

문서번호 대의협 제0813-05512호

시행일자 2014. 10. 14

수 신 수신처 참조

참 조

제 목 『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』 개정고시(제2014-177호) 안내

1. 귀 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.
2. 보건복지부에서 『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』을 아래와 같이 개정고시 함에 따라 이를 알려드리오니, 소속 회원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.

- 아 래 -

가. 주요내용

- 산정특례 등록 신청 방법과 적용시점 명시(안 제7조)
- 산정특례 재등록 신청 방법 (안 제8조)
- ‘건강보험 산정특례 등록신청서’ 개정 (안 별지)

나. 시행일: 발령한날부터 시행. 다만, 별표 4 중 결핵(A15~A19)에 관한 개정규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.

붙임: 『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』 고시 일부개정문. 끝.

(※붙임자료 메일송부/ 시도의회사회는 그룹웨어-전자게시판-시도업무교류방 참조)

대한의사협회

“환자를 내몸같이 국민을 가족같이”



수신처 : 시도의회사회장(16개), 각과 개원의협의회장(20개), 학회장(26개)